

# 서울특별시 국제교류협력 증진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허훈 의원 발의)

의안 번호	2225
----------	------

발 의 년 월 일: 2024년 10월 16일

발 의 자: 허 훈 의원(1명)

찬 성 자: 강석주, 구미경, 김경훈,  
김규남, 김영철, 김용호,  
김원중, 김재진, 김종길,  
김지향, 김태수, 김형재,  
남궁역, 남창진, 도문열,  
문성호, 민병주, 박강산,  
박 석, 박춘선, 유정인,  
윤기섭, 이병도, 이봉준,  
이상욱, 이성배, 이원형,  
임종국, 장태용, 최진혁,  
홍국표, 황철규 의원(32명)

## 1. 제안이유

- 국가가 주체였던 외교 패러다임이 변화하면서 많은 문제를 빠르고 효율적으로 해결할 수 있는 도시외교의 중요성이 부각되고 있음. 특히 서울은 도시 발전 경험, 1천만이 넘는 외국인 방문객 및 거주자, 문화·예술·관광, 외국기업 투자 유치 등 국제사회에서 서울시와 대한민국의 소프트파워를 증진시킬 다양한 강점을 갖고 있음
- 실제로 서울시는 2017년부터 시 재량으로 도시외교기본계획을 수립하고 있고 도시외교 전담부서도 마련되어 있으며 각종 우수 정책을 해외 도시들과 공유하는 등 도시외교 외연을 확장해가고 있음. 시장도 서울을 글로벌 top5 도시로 만들기 위해 각종 규제개혁 및 인프라 구축 의지를 표명해 왔음
- 이에, 기존에 도시외교, 국제개발협력 등 다양한 내용을 포괄하고 있는 「서울특별시 국제교류협력 증진에 관한 조례」를 전부개정하여 해외도시들과 실질적 외교활동을 효율적으로 진행할 수 있도록 하고자 함

## 2. 주요내용

- 가. 조례의 제명을 「서울특별시 도시외교 증진에 관한 조례」로 함.
- 나. 각 조항에 '국제교류협력'을 '도시외교'로 변경함.
- 다. 해외도시와의 실질적 교류협력 증진을 위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
- 라. 국제개발협력 관련 내용을 「서울특별시 국제개발협력에 관한 조례」로 이관하고 관련 규정을 삭제함.
- 마. 민간부문의 도시외교 참여 활성화를 위한 각종 지원 근거를 마련함.

## 3. 참고사항

- 나. 예산조치 : 해당사항 없음 (비용추계 비대상사유서 별첨)

# 서울특별시 국제교류협력 증진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서울특별시 국제교류협력 증진에 관한 조례 전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 서울특별시 도시외교 증진에 관한 조례

###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서울특별시가 해외도시와의 활발한 교류를 통해 국제 경쟁력을 갖춘 도시로 발전하기 위하여 도시외교 증진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도시외교”란 서울특별시(이하 “시”라 한다)가 직접 또는 민간부문과 협력하여 문화, 지식, 정책교류 등을 통해 외국 정부, 기관, 국민과의 관계를 강화하고, 시의 국제적 위상 제고 및 외국과의 상호이해와 신뢰를 증진시키는 국제교류 협력 활동을 말한다.
2. “친선결연”이란 시와 해외도시가 상호 긴밀한 협력을 바탕으로 경제·사회·문화·관광 등 다양한 분야에서의 호혜적 발전을 도모하기 위하여 체결한 협약을 말한다.
3. “우호협력협정”이란 시와 해외도시가 향후 교류를 추진하기 위해 체결한 상호 우호적인 협력 관계로, 친선결연을 체결하기 전의 관계를 말한

다.

4. “국제기구”란 국제연합과 그 산하기구·전문기구, 정부간기구, 지방자치단체간 기구를 포함한 준정부간 기구, 국제비정부기구 및 국제적으로 활동하는 재단·연구소·비영리단체·협의체 등을 말한다.

제3조(적용범위) 도시외교 증진에 관하여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4조(시장의 책무) ① 서울특별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시가 해외도시와의 활발한 도시외교 추진을 통해 도시경쟁력을 강화할 수 있도록 관련 시책 및 사업을 적극 추진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도시외교의 효율적 수행을 위해 민간부문과 협력체계를 구축하고, 그 중요성에 대한 사회적 공감대 형성과 시민 참여 증진을 위해 교육 및 홍보 등 필요한 노력을 하여야 한다.

## 제2장 친선결연 체결

제5조(친선결연 등) ① 시장은 도시외교 증진을 위하여 해외도시와 친선결연을 맺거나 우호협력협정을 체결하여 교류할 수 있다.

② 친선도시 및 우호협력도시는 지속적인 교류가 가능하고 상호이해가 증진될 수 있는 도시를 선정한다.

제6조(친선결연 등의 제의) ① 시장은 해외도시로부터 친선결연 등의 제의를 받은 경우에는 해당 도시의 각종 기본 자료를 송부 받아 양도시의 행정규

모, 도시여건, 교류의 적정성 등을 검토하여 결정하여야 한다.

② 해외도시에 친선결연 등의 체결을 제의하고자 할 때에는 대상 도시에 대한 각종 자료를 수집·분석하여 교류여건을 충분히 검토하여 결정하여야 한다.

③ 친선결연 등 교류여건 등을 검토할 때에는 다음 각 호를 유의하여야 한다.

1. 수도 또는 수도에 준하는 도시로 시의 국제적 위상과의 유사성
2. 면적, 인구 및 행·재정 수준 등 도시여건의 유사성
3. 산업, 도시특수성 등의 공통점 및 상호보완성
4. 상호 대등한 입장에서의 협력 및 우호증진 가능성
5. 역사적, 문화적 배경이나 지리적 특수여건 등을 고려한 교류의 필요성
6. 그 밖에 교류를 통한 실익 및 지속 가능성 등

제7조(친선결연 등의 의결) 시장은 해외도시와의 친선결연 또는 우호협력협정을 체결하고자 할 경우에는 「지방자치법」 제47조에 따라 시의회의 의결을 거쳐야 한다. 다만, 상호 노력 의무만을 내용으로 하는 우호협력협정을 체결하는 경우에는 서울특별시의회 소관 상임위원회에 보고하는 것으로 시의회의 의결을 갈음할 수 있다.

제8조(교류사업의 내실화) 시장은 친선도시 및 우호협력도시와의 교류가 시의 국제화 촉진 및 도시경제·문화 등 전반적인 분야에 실질적으로 기여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9조(기록의 보존 및 관리) 시장은 친선결연 등의 추진과 관련된 제반 기록 등을 정리하여 이를 계속 유지·관리하여야 한다.

제10조(친선결연 등의 취소) 시장은 친선결연 또는 우호협력협정을 취소하고자 할 경우에는 시의회의 의결을 거쳐야 한다.

### 제3장 해외도시와의 실질적 교류협력 증진 사업 추진

제11조(명예시민증 수여) 시장은 시의 도시외교 증진 및 해외도시와의 우호증진을 위해 시정에 공로가 현저한 외국인 또는 시를 방문하는 외빈에 대한 서울특별시명예시민증을 수여할 수 있다.

제12조(해외통신원 운영) 시장은 세계 각 도시의 해외 정책 및 현지 사례를 수집하고, 이를 현지와의 소통 및 시정에 활용하며, 해외도시에 시를 홍보하기 위하여 해외통신원을 운영할 수 있다.

제13조(도시의 날 운영) 시장은 친선도시, 우호협력도시 등과의 우호증진 및 시 거주 외국인과의 소통강화를 위해 정기 또는 수시로 “도시의 날”을 지정하여 다음 각 호의 행사를 실시할 수 있다.

1. 기념식 및 문화·예술·체육행사
2. 해외도시 출신 외국인을 위한 행사
3. 그 밖에 친선도시 등과의 도시외교 증진을 위한 행사

제14조(해외도시와의 실질적 교류협력 증진) ① 시장은 양 도시의 시민과 기업에 실질적인 도움이 되는 교류 협력을 위해 경제, 문화, 관광 등 다양한

분야에서 상호 협력 및 노력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해외도시와의 실질적 교류협력 증진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실시할 수 있다.

1. 해외에서 개최되는 문화행사 및 축제에 참여하거나 협력하여 시의 문화를 소개하고, 외국 시민과의 소통을 증진시키기 위한 사업
2. 시의 우수정책을 해외도시와 공유하여 상생발전을 도모하기 위한 사업
3. 해외 기관과의 인적 교류에 관한 사업
4. 전문인력의 양성 및 관련 프로그램 운영에 관한 사업

#### 제4장 국제기구 유치

제15조(국제기구 유치 기반의 조성) 시장은 국제기구 유치 기반을 조성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할 수 있다.

1. 국제기구 관련 국제협력을 위한 조사·연구
2. 국제기구 유치를 위한 전문인력 및 정보의 국제교류
3. 국제기구 전문인력 양성을 위한 교육·훈련
4. 그 밖에 국제기구 유치 기반의 조성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업

제16조(국제기구 유치 지원범위 등) 시장은 효율적인 국제기구 유치 활동과 유치가 확정된 국제기구의 안정적 운영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지원할 수 있다.

1. 해당 국제기구의 유치에 관한 국내·외 홍보
2. 해당 국제기구와 관련되는 자료의 제공
3. 국제기구의 개소 및 운영을 위한 행·재정적 지원
4. 국제기구와의 공동협력사업
5. 그 밖에 국제기구의 유치 또는 운영을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17조(국제기구 지원시설의 설치) ① 시장은 국제기구 유치기반 조성 및 안정적 운영 등을 위한 지원시설(이하 “국제기구 지원시설”이라 한다)로서 서울글로벌센터 빌딩 등을 운영한다.

② 시장은 서울글로벌센터 빌딩 등 국제기구 지원시설에 우선적으로 국제기구를 유치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③ 시장은 필요한 경우 국제기구 지원시설의 관리·운영에 대하여 그 사무의 일부 또는 전부를 법인·단체·기관 등에 위임·위탁할 수 있다.

④ 제3항에 따른 사무를 위탁할 때에 필요한 절차·방법 등에 관한 사항은 「서울특별시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의 규정을 따른다.

⑤ 시장은 국제기구 지원시설의 설립목적 수행 또는 원활한 운영·관리에 지장이 없는 범위 내에서 국제기구 지원시설 일부에 대한 대관을 허가할 수 있으며, 그 사용료는 별표와 같다.

⑥ 시장은 제5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사용료를 감면할 수 있다.

1. 서울글로벌센터 빌딩에 입주 중인 기관 및 단체에게 사용을 허가하는 경우
2. 국제기구 지원시설에 부합하는 행사로서 시장이 인정하는 경우
3. 시에서 주최 또는 주관하는 행사로서 시장이 인정하는 경우

#### 제5장 그 밖에 도시외교 증진을 위한 지원 체계

제18조(민간부문에 대한 지원) 시장은 민간부문의 도시외교 참여 활성화를 위하여 도시외교에 협력하거나 시에 대한 외국 국민들의 이해와 신뢰를 증진시킴으로써 시의 이미지 및 위상을 제고하는 활동을 하는 민간부문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보조하거나 업무수행에 필요한 행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제19조(국내외 협력체계 구축) 시장은 도시외교 증진 사업의 효율적인 추진과 활성화를 위하여 국내·외 기관·단체·대학 또는 국제기구 등과 공동으로 사업을 추진하거나 협력할 수 있다.

제20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체결된 민간위탁 및 협약은 이 조례에 따라 체결한 것으로 본다.

[별표]

서울글로벌센터빌딩 사용료 부과기준(제17조제5항 관련)

시설명	대상	면적	사 용 료		비 고
			기준시간	금액	
서울글로벌 센터빌딩	국제회의장 (A)	142m <sup>2</sup>	2시간 (초과시간 당)	100,000 (50,000)	°냉·난방기, 음향, 조명, 영상 장비 등 부대시설 사용시 에는 요금을 정하여 별도 로 부과
	국제회의장 (C)	139m <sup>2</sup>		100,000 (50,000)	
	국제회의장 (A+B)	225m <sup>2</sup>		150,000 (75,000)	
	국제회의장 (A+B+C)	364m <sup>2</sup>		200,000 (100,000)	

- ① 기준시간은 2시간으로, 기준시간 초과시 초과시간당 사용료는 기준사용료의 50%
- ② 사용시간이 기준시간 미만인 경우는 기준시간으로 봄
- ③ 설비 설치 및 준비시간도 사용시간에 포함
- ④ 사용료는 부가가치세를 포함한 금액임
- ⑤ 사용자의 주차장 사용요금은 별도 징수함
- ⑥ 토요일 및 일요일, 공휴일 사용료는 100분의30 범위 내에서 가산하여 부과할 수 있음

# 서울특별시 국제교류협력 증진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 비용추계 비대상사유서

### 1. 판단 근거

- 서울특별시 국제교류협력 증진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은 제4조(시장의 책무), 제5조(친선결연 등), 제11조(명예시민증 수여), 제12조(해외통신원 운영), 제13조(도시의 날 운영), 제14조(해외도시와의 실질적 교류협력 증진), 제15조(국제기구 유치 기반의 조성), 제16조(국제기구 유치 지원범위 등), 제17조(국제기구 지원시설의 설치), 제18조(민간부문에 대한 지원) 및 제19조(국내 외 협력체계 구축)를 신설함에 따라 비용이 발생할 수 있으나 관련부서에서 예산을 기편성하여 추진 중이므로 비용추계 대상에서 제외함

[참고] 2024년도 국제교류협력 증진 관련 분야별 예산 내역

조항	사업명	예산액(천원)
제4조, 제18조, 제19조	도시외교 역량강화	693,600
	국제개발협력사업 수행	289,200
	국제개발협력지역 교류협력행사	183,000
	국제개발협력 전담조직 운영	1,716,499
제5조	국외 상호결연도시 의회대표단 초청	71,096
	해외 상호결연도시 교류 및 국제회의 참석	378,212
제11조	서울시 외국인명예시민 선정	36,500
제12조	단기국외훈련	1,348,151
제13조	서울세계도시문화축제	597,900
제14조	아태지역 교류협력행사	163,000
	유럽지역 교류협력행사	183,000
제15조, 제16조, 제17조	국제기구 교류협력 및 활동 지원	701,376
	서울글로벌센터 운영	1,799,019
	서울글로벌센터빌딩 운영 관리	3,261,506

※자료: 2024 서울시 예산서

2. 작성자

시의회사무처      재정분석담당관

담    당    관      오희선

추계세제팀장      김중헌

추계분석관      김지혜

☎ 02-2180-7953

e-mail : kjh0123@seoul.go.kr

**※ 이 서류는 의안 발의 참고 자료입니다.**